

제8절 옥외공간시설

8.1 녹지시설

8.1.1 고려사항

- ① 자연환경의 잠재력 반영
- ② 단지어귀 등에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지미화를 위한 경관식재를 도모
- ③ 주거동 주변녹지는 동전면 녹지를 넓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 ④ 단지외곽부위에 가급적 폭2m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수목으로 단지가 차폐·차음 및 위요되게 조성
- ⑤ 차도 및 대형주차공간에는 녹지를 확보하여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
- ⑥ 주차장 그늘식재를 위한 단위녹지의 폭은 최소 2m이상 유지하여 식수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⑦ 환경 친화적인 녹지조성이 되도록 벽면녹화, 채원, 과수원 등의 생태녹화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

8.1.2 녹지의 설치기준

- 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까지의 거리는 **2m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
-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

- ④ 면적 200m²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건축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 ⑤ 옥상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기준, 그늘식재, 식재수량 및 규격, 식재수종,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조경기준에 따른다.

※ 그늘식재 (조경기준 제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1.3 단지내 녹지율

① 녹지율의 정의

조경기준(2000.6.20 건설교통부 고시) 제3조에 의거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 부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정의

- ② 녹지율은 아래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③ 산출기준

- ① 대지면적
- ② 건축면적
- ③ 도로면적 = 도로길이 × 폭 (차도+보도)
- ④ 보행로 및 광장면적 (미술장식품, 수경시설 포함)
- ⑤ 주차장
- ⑥ 어린이놀이터
- ⑦ 운동장
- ⑧ 휴게소
- ⑨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LPG저장소 (지상 돌출부)
- ⑩ 유치원
- ⑪ 기타 (주동현관 주진입부위 및 램프,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
- ⑫ 순 녹지면적 = ① - (②+...+⑪)
- ⑬ 식재면적 = ⑫ + (④,⑥,⑦,⑧중 식재면적) + 옥상조경 등 법적 인정면적
- ⑭ 조경시설면적 = ④,⑧중 식재면적을 제외한 면적

$$\text{㉠ 녹지율} = \text{㉢} \div \text{㉠}$$

$$\text{㉡ 조경면적} = \text{㉢} + \text{㉣}$$

8.1.4 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율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① 생태면적률의 정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중 환경관련등급에 해당하는 조경(외부공간)의 등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면적에 대한 자연순환기능면적률을 말한다.

② 생태면적률 평가방법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전체면적 = $\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 / \text{전체면적}$

③ 생태면적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4급	생태면적률 30% 미만

④ 자연지반녹지율의 정의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⑤ 자연지반율 평가방법

자연지반녹지율(%) = $\text{자연지반녹지면적(m}^2\text{)} / \text{대지면적(m}^2\text{)} \times 100$

⑥ 자연지반녹지율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
2급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 ~ 25% 미만
3급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 20% 미만
4급	자연지반녹지율 15% 미만

8.2 도시공원 및 녹지

8.2.1 용어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②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③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긴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사장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수영장·공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등 공원관리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8.2.2 도시공원의 세분(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 분		내 용
도 시 공 원	생활권 공 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근 린 공 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주 제 공 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역 사 공 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문 화 공 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수 변 공 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
		묘 지 공 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
		체 육 공 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8.2.3 녹지의 세분(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5조)

구 분		내 용
녹 지	완 충 녹 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 관 녹 지	도시와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 결 녹 지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8.2.4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 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8.2.4 도시공원의 면적기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① 하나의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8.2.5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시행규칙 제5조)

- ①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2.6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어린이공원 : 60%이하
- ② 근린공원 : 40%이하
- ③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수목,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11조)

8.2.7 고려사항(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①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한다.
- ② 각종 공원시설은 상호간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 ③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8.3 보행로 등

8.3.1 고려사항

- ① 단지내의 동선은 보행자의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② 보행로는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관리소·상가·광장·운동장·휴게소·놀이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보행자전용로의 도입을 고려한다.
- ③ 보행로의 결절점에는 휴게소 등의 옥외공간을 배치한다.
- ④ 보행로는 평지나 경사로로 계획하고 가급적 계단의 설치는 피하도록 한다.
- ⑤ 길이가 10m이상, 폭1.5m이상인 보행로에는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할수 있는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8.3.2 보도의 설치기준

폭 8m이상의 단지내 도로에는 폭 1.5m이상의 보도를 설치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

8.4 안내표지판 등

8.4.1 고려사항

- ① 단지의 어귀 등 종류별 기능을 고려하여 녹지에 배치한다.
- ② 지하주차장표지판,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
- ③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종합안내판은 단지입구에 우선 배치하며 단지입구의 인식성향상을 위한 단지입구종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8.4.2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1조)

- ①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성 격
단지유도표지판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하여 설치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하여 설치
단지종합안내판	단지의 주요 출입구마다 단지 안의 건축물, 도로 기타 주요 시설의 배치를 표시하여 설치
단지내 시설표지판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 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하여 설치

- ② 주택단지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회사,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공사기간,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5 휴게소

8.5.1 고려사항

- ① 휴게소는 단지전체의 오픈스페이스체계를 검토하여 배치하고 보행동선을 감안하여 개별휴게공간의 출입구, 외곽선 및 휴게시설의 배열을 결정한다.
- ② 휴게소 규모에 적절한 파고라,의자,평상등을 설치한다.
- ③ 원두막의 경우 하부평상주변에 너비 1m이상의 포장면이 통로로서 제공되게 한다.
- ④ 많은사람이 모이는 원두막,파고라등의 시설은 주거동의 발코니앞 배치를 지양하거나 멀리 떨어지도록 하며 휴게소의 출입구나 출입로는 주거동 발코니와 마주치는 위치를 피하도록 한다.
- ⑤ 휴게공간에는 문이나 문주등의 입구시설, 트렐레스, 낮은담장등의 입면시설, 시비, 경석, 조형물, 화분등의 조경시설 및 조명시설을 사용하여 정서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8.5.2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①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②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 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8.6 자전거 보관소

8.6.1 고려사항

- ① 100세대마다 15대(시·군지역은 25대)의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계획한다.
- ② 복지관이나 상가 건물 및 주동마다 1개소 이상은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주동의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8.6.2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②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할 것
-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 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8.7 미술장식품 설치(조경설계지침)

8.7.1 고려사항

- ①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적합하도록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② 단지어귀 및 가로공간, 건물로 위요된 공간, 중심광장, Sunken Plaza 또는 휴게 공간 등 미술장식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 ③ 정의
“미술장식”이라 함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작품으로 다음 각호를 말함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8.7.2 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 ①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각호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 제외)이 1만㎡(증축의 경우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

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시설은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 판매 및 영업시설
- ㉤ 의료시설중 병원
- ㉥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과 통신시설

②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시행령 별표1의2)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1,000이상 7/1,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의시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 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5/1,000이상 7/1,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이상 2만㎡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초과인 건축물 : 연면적 2만㎡에 해당하는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금액

8.8 경사면 설치 (2005 토목설계 지침)

① 흙막기 비탈면 기울기

원지반의 토 질	구 배 기 준		비 고
	5m 미만	5m 이상	
발 파 암	1:0.8	1:1.0	· 직고 3m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한다.. · 필요시 비탈면보호공및 표면수처리를 위해 증배수구 설치 · 비탈면 상단과 필요한 소단부에 측구 설치 · 흙막기고 5m 이상으로 필요시 낙석방지용 철책설치
풍 화 암	1:1.2	1:1.5	
토 사	1:1.5		

② 흙쌓기 비탈면 기울기

구 배 기 준		비 고
0~5m 미만	5m 이상	
1:1.5	1:2.0	· 직고 3m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한다. · 필요시 비탈면보호공및 표면수처리를 위해 증배수구 설치 · 비탈면 상단 또는 하단과 소단부에 측구 설치

※ 소단 설치기준

- 직고 3m마다 비탈면적의 1/5이상

8.9 옹벽등의 설치

8.9.1 수해방지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규칙 제7조)

- ①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단지경계선 주변 외곽부분 포함)에 높이 2m이상의 옹벽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을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옹벽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그 띄우는 거리가 5m이상(3층이하의 건축물 3m이상)인 경우 제외
- ② 배수구, 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 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 포함)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 ㉡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㉔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 격자블럭 기타 비탈면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비탈면과 건축물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㉕ 건축물은 그 외곽 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 만큼 띄울 것.
다만,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㉖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아하 “옹벽등”이라고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옹벽등과 비탈면 아랫부분사이에 너비 1m이상의 단을 만들것
 - ㉗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 것.

8.9.2 대지조성시 안전조치(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법 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②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단,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
- ③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④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 ⑤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이 그 비탈면의 토질,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 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